제목:「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명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 개정 시행일 : 2022년 12월 27일 (화)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 주요 변경 내용 : 고객과 금융기관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대고객 약관에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 1 조 (목적) <생략>	제 1 조 (목적)<좌동>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상호금융 <u>회사</u> 의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포함)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를 잔고이전·해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상호금융 <u>기관</u> 의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포함)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를 <u>잔고이전·해지하며</u> ,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 지급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문구수정 (상호금융기관으 로 용어통일) 내계좌지급정지 반영
2. ~5<생략>	2. ~5<좌동>	<신설>
<신설>	6. "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	 내계좌지급정지 반영

6~12 <생략> 7-13 <좌동> 13. "핀테크기업"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14. "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이용기관의미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확대(금융기관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4. <생략> 15. <좌동> 제 3 조 <생략> 제 3 조 <좌동> 제 4 조 (이용채널) 제 4 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문구수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은행창구,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이용기관용어반 비대면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신설>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영, 내계좌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반영) 제 5 조 ~제 8 조<생략> 제 5 조~제 8 조 <좌동> 제 9 조 (핀테크기업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제 9 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문구수정 고객은 핀테크기업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핀테크기업 인증 정책에 따른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이용기관용어반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10 조 (조회) 제 10 조 (조회) ① 고객은 제 4 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① 고객은 제 4 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8 조에 따라 개설된 계좌 및 카드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8 조에 따라 문구수정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 7 조에 따라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 7 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문구수정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 ④ <생략>

제 11 조<생략>

<신설>

제 12 조~제 14 조<생략>

제 15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____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
- ①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상호금융<u>회사</u>의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③ 금융투자회사,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 ④ <좌동>

제 11 조 <좌동>

제12조 (계좌지급정지)

- ①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 ③ 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⑤ 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 ·요금 ·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⑥ 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u>제 13 조~제 15 조</u><좌동>

제 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
- ①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③ 금융투자회사,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내계좌지급정지 반영

문구수정 (상호금융기관 으로 용어 통일)

<신설>	부칙<제정> 이 약관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	<u>부칙<1></u> 이 약관은 2017 년 4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표기 (이하 동일)
<신설>	<u>부칙<2></u> 이 약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u><신설></u>	부칙<3> 이 약관은 2018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	<u>부칙<4></u> 이 약관은 2019 년 5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u><신설></u>	부칙<5> 이 약관은 2019 년 11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u><신설></u>	<u>부칙<6></u>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 5. 31) 이 약관은 2021. 5. 3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 2 조 제 1 항 제 13 호 및 제 4 조, 제 9 조의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은 2021. 7. 15.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u><7></u> 이 약관은 <u>2021 년 5월 31일</u> 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 2조 제 1항 제 13호 및 제 4조, 제 9조의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은 <u>2021 년</u> <u>7월 15일</u> 부터 시행합니다.	날짜표기정정
<신설>	<u>부칙<8></u> 이 약관은 2022 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